

<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>

제2조 (계약기간)

-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.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하며,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함을 원칙으로 한다.
다만,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.
- ② 「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」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,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, 문자, E-Mail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.

제3조 (계약목적)

- ①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(기관)와 서비스대상자(보호자)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.
- ②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어르신 입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입소기간,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시설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 권리를 보호하고,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③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자립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4조 (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)

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한다.

-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.
- ②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40% 또는 60% 경감한다.
- ③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, 비급여비용은 시설장이 정한다.
- ④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.
- ⑤ 이용료는 「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

시」에 따라 산정 한다.

- ⑥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노인장기요양 보험 홈페이지 및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.
- ⑦ 월 이용료 부담액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음.

장기요양기관(재가기관) 기본 수가

[등급별 월 한도액]

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	인지지원등급
2,069,900	1,869,600	1,455,800	1,341,800	1,151,600	643,700

본인부담금 내역	기초생활수급자	0%
	의료, 차상위, 감경 (60%)	6%
	감경 (40%)	9%
	일반	15%

재가 비용 산정방법 (장기요양급여 제공 기준 및 산정방법 고시에 따름)

[주간보호]

분 류		등 급				
		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
3시간이상 ~ 6시간 미만	금 액 (원)	39,810	36,850	34,020	32,470	30,920
6시간이상 ~ 8시간 미만		53,360	49,420	45,620	44,070	42,500
8시간이상 ~ 10시간 미만		66,360	61,480	56,760	55,210	53,640
10시간이상 ~ 13시간 미만		73,110	67,720	62,570	61,000	59,450
13시간이상		78,400	72,630	67,100	63,990	63,990

[비급여항목에 대한 이용료 - 주간보호]

비급여	식재료비(1식)	* 조식 : 2,500원 * 중식 : 3,000원 * 석식 : 2,500원
	간식비(2회)	1,000원
	등 외 입소(1일)	27,000원

[방문요양]

구 분	금액(원)	구 분	금액(원)
30분 이상	16,630	150분 이상	48,250
60분 이상	24,120	180분 이상	54,320
90분 이상	32,510	210분 이상	60,530
120분 이상	41,380	240분 이상	66,770

[방문목욕]

분 류	금액(원)
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(차량내 목욕)	84,670
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(가정내 목욕)	76,340
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	47,670

제5조 (신원인수인의 권리)

- ①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.
 1.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
 2.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
 3. 이용자 면회 및 외출에 관한 권리
 4. 이용자에 대한 건강, 식사, 생활상담,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
 5.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
 6.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보호자의 알 권리

제6조 (신원인수인의 의무)

- ①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·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
- ②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,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납부 의무
- ③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

-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
- ⑤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, 파손,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

제7조 (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)

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.

- ① 대상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때
- ②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
- ③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
- ④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
-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
- ⑥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
- ⑦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.